

대전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2021가단117996 판결 [사해행위취소]

---

## 전 문

원 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창우

피 고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영관

변 론 종 결 2021. 10. 21.

판 결 선 고 2021. 11. 25.

## 주 문

1.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1. 2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등기과 2021. 1. 28. 접수 제786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 1. 인정사실

가. D은 2020. 2. 20.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살해하였다.

나. 대전지방법원은 2020. 5. 29. 망인에 대한 살인죄로 징역 20년 등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대전지방법원 2020고합92, 2020보고3(병합)], 이에 D과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대전지방법원은 2020. 8. 21. D과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대전지방법원 2020노190, 2020보노4(병합)], 위 판결은 그 즈음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들은 2021. 4. 14. 망인의 상속인들로서 D을 상대로 원고 A에게 237,7438,807원(= 망인의 일실수익, 위자료 상속분 215,607원 + 적극적 손해 12,161,200원 + 위자료 10,000,000원), 원고 B에게 225,582,607원(= 망인의 일실수익, 위자료 상속분 215,582,607원 + 위자료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대전지방법원 2021가합103260), 위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라. D은 2021. 1. 27.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2021. 1.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피고는 2021. 9. 16. D을 상대로 대전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대전가정법원 2021드단219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D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는바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D과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소유하는 것으로 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이는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도한 재산분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에게는 피보전채권인 D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하고, 1) D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무자력 상태가 되는데,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2)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이 망인을 살해한 범죄사실로 구속된 상태에서 피고에게 협의이혼을 하자는 취지의 편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이 있었던 2021. 1. 27. 즈음부터 피고가 D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2021. 9. 16., 사이에 피고와 D 사이에 협의이혼 절차나 재산분할 협의가 진행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D이 피고에게 보낸 편지의 기재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와 D 사이에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였다거나 더 나아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소유하는 것으로 재산분할협의를까지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더욱이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혼인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인바, 그 중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화해 또는 조정에 의한 이혼을 포함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33458 판결 참조).

그렇다면 가사 피고가 D와 협의이혼을 진행하면서 재산분할을 위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피고와 D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증여계약은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재산분할에 관한 유효한 협의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러한 이유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한편,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도 취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현재까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액이 얼마인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 3. 25. 근저당권자 F 주식회사,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고,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서 이 사건 증여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은 불가분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증여계약의 일부만을 취소하게 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와 효용을 현저히 감소시킬 것으로 보이므로(대법원 1975. 2. 25. 선고 74다211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이유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의 청구에 따라,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증여계약 전체가 취소되어야 한다.

5) 따라서 피고와 D 사이에 2021. 1.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그리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우성

별지

## 부 동 산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대전 서구  철근콘크리트 벽식조 스라브지붕 15층 아파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대전 서구  대 5289㎡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6층  호 철근콘크리트 벽식조 84.93㎡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5289분의 44.075. 끝.

1) 다만 피보전채권인 D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액이 얼마인지는 명확하지 않다.